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(서울형 키즈카페)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-2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: 2026. 2. .

제 출 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아동의 자유로운 ‘놀 권리’ 보장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(서울형 키즈카페)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생활권 근거리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영향과 관계없이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임.
- 나. 아동 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따라,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(서울형 키즈카페)
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추진근거
 -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및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
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위탁운영)
 - 추진 필요성
 - 계절미세먼지 등 실외 환경적 제약 없이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

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 필요

- 위탁자는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탁자는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,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,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·경제성 증대
- 전문성과 아동 복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아동에 대한 현장 대응성 제고 및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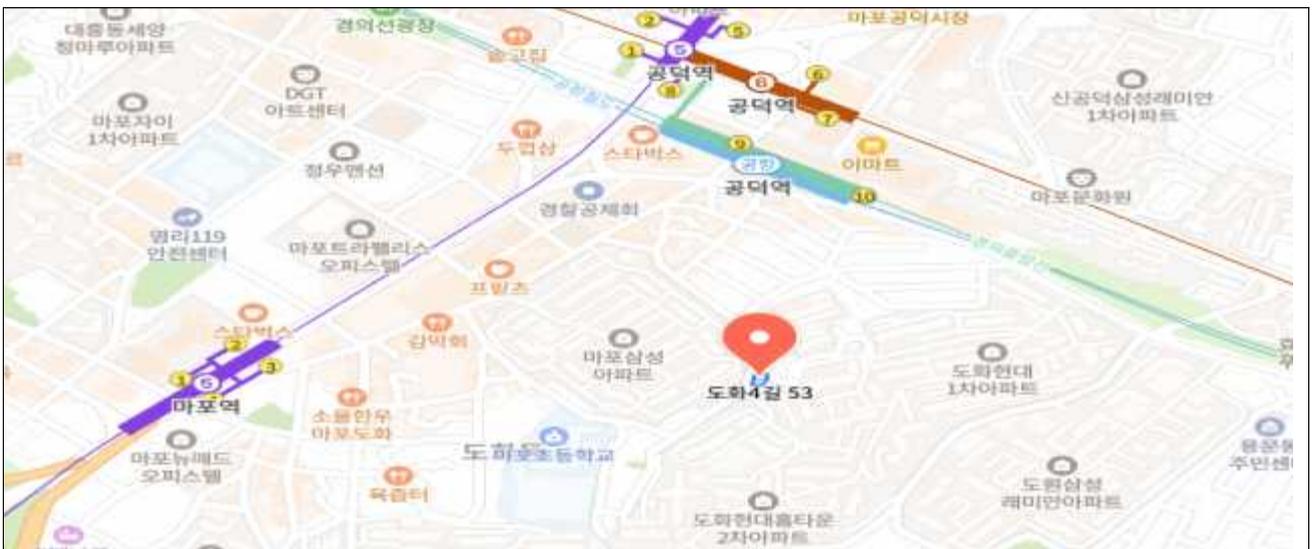
-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
- 돌봄 및 놀이 복합시설로의 운영 및 관리
- 조직·인사관리·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
- 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관리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및 면적

시설명	소재지	면적(m ²)	개관 예정일
서울형 키즈카페 마포구 도화동점	마포구 도화4길 53(도화동)	210.5	2026. 6.
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위·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(연간)

(단위: 천원)

구분	총계	시비	구비	비고
총계	211,902	135,697	76,205	
인건비 (3인기준)	154,902	112,897	42,005	시비: 2명까지 100%, 초과 인원 30% 구비: 2명 초과 인원의 70% *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준용
운영비	57,000	22,800	34,200	시비40%, 구비60%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.
- 서울형 키즈카페 전반의 관리·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도, 놀이 및 돌봄에 대한 기술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·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및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위탁운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및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아동복지법 [시행 2025. 10. 23.] [법률 제20925호, 2025. 4. 22., 타법개정]

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

-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3. 22., 2017. 10. 24., 2019. 1. 15., 2021. 12. 21., 2023. 7. 18.>
7. 아동전용시설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아동회관, 체육·연극·영화·과학실험전시 시설, 아동휴게숙박시설,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·오락 시설, 교통시설,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-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[시행 2025. 9. 30.] [보건복지부령 제1127호, 2025. 9. 30., 타법개정]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-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-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, 2020. 1. 3.>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
-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 1. 3.>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 - 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- 2. 위탁계약기간
 -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 -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-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 -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-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 - 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 -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 [제23조에서 이동 <2012. 8. 3.>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[시행 2024. 5. 2.] [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78호, 2024. 5. 2., 제정]

제12조(위탁운영)

-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단, 놀이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놀이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5. 9. 18.] [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793호, 2025. 9. 18., 일부개정]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9.18.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, 2023.3.9.>

나. 향후일정(안)

- 2026. 3.: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
- 2026. 3.: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
- 2026. 4.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개최
- 2026. 4.: 위·수탁 협약체결
- 2026. 5.: 위탁사무 운영 개시
- 2026. 6. 서울형 키즈카페 마포구 도화동점 개관